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

2022. 5. 1.



교육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일러두기】

□ 적용 대상 및 시기

-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시기) '22.5.1.~'22.1학기까지(잠정)
 - ※ (1학기 중) 방역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5.23.~'22.1학기, 잠정)' 전환(예정)에 따라, 학교 관련 변경·적용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 (1학기 이후)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별도 안내

□ 기본 성격

- 감염병 관련 각종 지침*을 바탕으로 방역당국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4항에 따라 지역 또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 가능
 -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등
 - ※ 학생 출결 등에 관한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참고
- 학교에서는 동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방역당국 지침 추가 변경 시* 학교에도 연동하여 적용
 - * (예) 법적 기준(격리 체계 변화 등) 및 의료체계(확진자 관리, 보건소 검사체계 등) 등
 - ※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적용함

□ 사용하는 용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예방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코로나19
- 학교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 : '임상증상' → '유증상 또는 의심증상'

【주요 개정사항】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30% 수준 확보·활용	교육청 자율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이상 확보·활용	교육청 자율
접촉자 관리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후 진단검사 2회 권고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	기존 접촉자 자체조사는 학교 자율관리로 전환, 진단검사는 1회 권장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급식실 지정좌석제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양치실 관리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유지】

- ①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② 환기(창문 상시 개방), ③ 급식실 칸막이 설치,
- ④ 일시적 관찰실 운영, ⑤ 방역인력 배치, ⑥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목 차

I. 대응 기본방향

- 1. 기본 원칙 1
- 2. 대응 및 협조 체계 1

II. 평상시 관리

- 1. 학교 환경관리 2
 - 방역자원 및 별도공간 ▪ 소독·환기 ▪ 급식실 및 기숙사 등 관리
- 2. 개인 방역관리 5
 -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 발열 검사 ▪ 외부인 관리

III. 상황 발생 시 대응

- 1. 유증상자 발생 시 6
 - 학교 ▪ 유증상 학생 및 교직원
- 2. 확진환자 발생 시 7
 - 학교 ▪ 확진 학생 및 교직원

IV. 재유행 시 신속 대응 8

- 기존 참고자료(포스터 등) 및 서식 등은 이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관련 홍보물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또는 질병관리청(<https://kdca.go.kr>) 및 코로나-19(<http://ncov.mohw.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활용

1 기본 원칙

-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발열검사, 환기, 급식실 칸막이, 일시적 관찰실, 방역 인력, 소독)하되, 그 간의 방역 관리역량 등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성 확대 - 학교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 자체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상황별 대응

* 교내·외 환경, 학교 구성원 역할, 학사관리, 급식실 운영, 기숙사 관리, 소독·환기, 발열 검사, 일시적 관찰실 확보, 방역인력 운영, 방역물품 관리, 개인위생 교육 실시 등

<학교방역 관리 기본방향>

- ▶ (기본방역수칙 강조)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 실천 및 개인위생 교육·홍보 강화
- ▶ (지속 가능한 예방관리)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단위학교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가 지속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방역관리(발열 검사, 환기, 소독 등) 지속 실시
- ▶ (감염 취약층 관리)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 학교 자율관리(검사 안내 등) 등을 통해 감염 취약층 관리
- ▶ (재유행 대비) 신종 변이 발생 및 재유행 시 신속 대응 체계 전환

2 대응 및 협조체계

- (학교 내) 학교장(원장 포함, 이하 같음)은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역할 분담 등 기존 체계 유지
 - ※ '코로나19 담당자' 복수 지정, 학교장은 담당자와 함께 예방 활동을 총괄
- (학교 외) 교육기관과 방역당국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신속 대응
 - 학교-교육(지원)청-보건소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응 방식 협의

<학교 내·외 대응 및 협조 체계>

역할	기관	기관	역할
· 학교별 계획 수립 및 예방 활동 · 평상시,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		
· 현황 파악 및 전파, 현장 지원 · 방역당국과 연락체계 유지	교육 지원청	↔ 시군구 보건소	· 담당자 지정, 연락체계 유지 · 관할 지역 내 발생 현황 파악
· 현황 파악 및 전파, 현장 지원 · 지역 여건 고려 조치계획 마련 · 방역당국과 협력체계 유지	교육청	↔ 시도 질병청 권역센터	· 담당자 지정, 연락체계 유지 · 교육당국 상담 및 기술지원, 지침 전파 · 담당자 지정, 연락체계 유지 · 시도/교육청 협력체계 조기 정착 지원
· 지침 마련, 상황 총괄 관리	교육부	↔ 질병청	· 지침 마련 지원

1. 학교 환경관리

① 방역자원 및 별도공간

- (방역물품) 감염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물품 확보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방역물품 상태 점검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방역물품을 일정 수량 이상 확보·유지하고, 교실 또는 보건실 등 학교 여건에 맞게 비치

《학교 방역물품 확보(예)》

- ▶ (체온계) 각 교실 1개, 보건실 2개, 통학버스 1개
- ▶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장(소아용 포함)
※ 호흡기질환 학생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비말차단용 및 수술용 마스크 일정수량 비축
- ▶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교실 2개, 보건실 4개, 교무실, 식생활관 및 특별실 1개
- ▶ (책상 등 소독제, 알콜티슈) 각 교실, 보건실, 교무실, 식생활관 및 특별실 충분량
- ▶ (기타) 화장실에 종이타월 등 위생용품 비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비치 등

- (방역인력)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 전반 방역 활동 및 급식실·특별실 등 방역 활동 지원을 위한 방역인력 적극 활용

《학교 방역인력 업무 내용(예)》

- 학교 전반 방역 활동: 등교 시 발열 체크 지원, 학교 출입자 관리 지원, 공간 환기, 쉬는 시간 복도 및 교실 외 장소 등에서 학생 방역수칙 지도, 교내 공용시설 및 기구표면 소독, 방역용품 관리, 기타 방역 활동 등
- 장소별 방역 활동: (보건실) 보건교사 보조업무(의료인 업무 제외), (급식실)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식탁·의자·칸막이 등 급식 시설·기구소독, 식사 장소 환기, 식사 지도 등, (기숙사) 입소 시 발열 체크 및 출입자 관리 지원 등

- (일시적 관찰실) 코로나19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1층에 마련이 원칙, 학교 여건상 1층 마련이 어려운 경우 층간 이동 최소화 및 신속한 귀가가 가능한 장소에 마련

※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선정하며,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재실한 경우에는 복도 쪽 창문은 닫고, 실외 쪽 창문은 모두 개방

※ 등교 시 발열 검사에서 발견된 유증상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 필요한 경우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방안 고려

2 소독·환기

- (소독) 개인물품,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청소·소독 강화
 - 개인물품* 및 공동사용 접촉면** 등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 책상, 교탁, 의자, 전화, 키보드 등, ** 화장실의 수도꼭지·변기·문고리, 문 손잡이, 난간, 출입문, 엘리베이터, 스위치, 음수대 등
 - 「감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 실시
 - * <학교> 4월~9월, 2개월마다 1회 이상 / 10월~3월, 3개월마다 1회 이상
-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개방이 원칙
 - 기상 상황(온도, 강수, 미세먼지 등) 등으로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 창문 수시 개방(쉬는 시간마다), 환기 설비 가동 등으로 충분한 환기 실시
 - 냉·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수시로 환기를 하고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 비말이 확산되지 않도록 풍향 및 풍량에 주의(최소 1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환기 시 교실 창문 및 출입문을 열어 맞통풍 할 것)
 - ※ 모든 창문을 동시(외기, 복도)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 환기 설비는 외기도입량을 최대로 하되(내부 순환모드 지양), 필터 교체 시 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 학교 내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에서도 환기 강화
 - ※ 화장실에 환기용 팬이 설치된 경우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팬을 상시 가동

3 급식실 및 기숙사 등 관리

- 【급식실】 감염예방을 위한 식사환경 조성 및 급식방역 관리 내실화
 - (식사환경)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교실배식은 식사시간 휴대용 칸막이 권고)
 - ※ 칸막이 설치 시 권장 높이(참고) : (초) 40~50cm, (중) 54~63cm, (고) 55~67cm
 - ※ 지정좌석제, 시차배식 등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소독·환기) 학생 접촉이 빈번한 시설·기구 매일 청소·소독, 식사 시간 모든 창문 상시 개방 및 급식 전·후 수시 환기 강화
 - (식사지도) 손 소독, 식사 시 대화 금지,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등 지도 강화, 학교별 학생지도 계획 수립 및 실천
 - (종사자 방역관리) 급식종사자 격리 대비 학교별 급식 대응방안* 마련
 - * 교육(지원)청 또는 단위학교에 구성되어있는 '대체인력풀' 사전점검 및 상시 관리
 - ※ 교육(지원)청에서는 타 시도 대체인력풀 사례(대체인력 거점학교 지정·운영, 대체전담 인력 운영, 지자체·관련 대학·학원 협업 등)를 참고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강구

○ **【체육관, 양치실】** 체육관 내 동시 수업 및 양치실 운영기준 등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율 결정·시행**

○ **【기숙사】** 시설 방역 및 입사생 관리 등을 통한 기숙사 내 감염 예방

<기숙사 시설 및 환경관리>

-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숙사생 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
- 기숙사 내 공용공간(독서실, 면학실, 정보검색실, 휴게공간 등)을 개방할 경우 칸막이 설치, 충분한 거리 확보(좌석 띄우기 등) 등 유지
-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행동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화장실 개수대에 손 세정제 및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 충분히 비치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수시로 실내공간 환기(창문 및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 실시

<입사생 및 방문객 출입·이동 등 관리>

- 기숙사 입사생은 매일 1회 이상 발열 및 의심 증상 확인
- 취침 공간 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하고 집단 간식 섭취 자제
- 외부인(보호자,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 출입은 가급적 제한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조치>

- 유증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 유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등 실시
-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가급적 귀가조치하여 증상이 호전되면 기숙사로 복귀시키되,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조치가 불가한 경우 1인실 사용 권고

2. 개인 방역관리

1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가정과 연계한 생활수칙 홍보 등 실시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⑤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인정을 통해 출석(병가) 인정 가능)
*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 매일 확인 및 자가진단앱 참여(권고) 등 지속 관리 필요(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내용을 토대로 항목 등 보완 예정, 5.23.이후)

2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 권고

-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인정 대상: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

3 [발열 검사]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 검사, 점심시간 전 추가 발열 검사(담임 또는 교과교사) 실시

- (교실 입실 전) 모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가급적 실외에서 검사
* 학교 출입 외부인 포함,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지도 교사, 이용 학생 등은 탑승 전 발열 검사 실시
- (점심 식사 전) 급식실 이동 전* 추가 발열 검사 실시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를 위한 시간장소 조정이 가능하나 가급적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 검사
※ 교실 배식 학교는 점심 식사 전 교실에서 추가 발열 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유증상 확인
- (방법)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원칙, 1차 결과 37.5°C 이상 발열 확인 시 일정 시간 안정을 취한 후 고막 체온계로 재측정(37.5°C 이상 발열 확인 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 신체활동 또는 식사 후 37.5°C 이상 측정 시, 10~30분 정도 안정시킨 후 체온 재측정

4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하되, 학교 출입 시에는 발열, 증상 여부 등 이상 여부 확인 후 방문 허가

- ※ 방문객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안내
- ※ 매점, 청소, 경비 등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은 교직원의 건강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

Ⅲ

상황 발생 시 대응

1. 유증상자 발생 시

1 학교

- (등교 전 관리) 유증상자는 등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를 받도록 안내
 - *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학교 내 관리) 37.5℃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 유·초등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하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동
- (모니터링) 학교 여건 등 고려, 유증상자 건강 상태 모니터링 자율 실시

2 유증상 학생 및 교직원

- (관리 기준)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방역수칙)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참고)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코로나19(covid-19)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이내
- (전파 방법)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 배출(호흡기 침방울을 직접 들이 마시거나 눈, 코, 입의 점막에 오염되어 전파, 감염자와 2m 이내 밀접 접촉 시 감염 위험이 높음)
- (주요증상) 무증상·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등
 - ※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대상: 고령자,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등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자

◆ 오미크론 변이

- (잠복기) 평균 잠복기 4.2일(2~8일)로 델타 변이의 평균 잠복기 5.8일 보다 짧음
- (전파력, 중증화율)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중증도는 낮음
- (증상) 다른 변이와 증상은 유사, 점증상태와 기저질환, 연령 이전 감염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확진환자 발생 시

1 학교

- (소독) 확진환자가 머무른 공간은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 완료 전 까지 시설 이용 제한 조치
 -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을 통해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에 대한 관리 철저(단,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 소독제로 천(형겂 등)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천(형겂 등)으로 표면을 닦음(소독제 종류별 사용법 준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는 학교 자율관리로 전환
 - 자율관리 시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 안내(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 *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참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 ▶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 (모니터링) 학교여건 등을 고려한 확진환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율 실시

2 확진 학생 및 교직원

- (관리기준)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및 관리 기준’ 적용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
 -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방역수칙)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IV

재유행 시 신속대응

- 재유행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학교별 강화된 방역관리 방안 사전 준비 및 업무연속성계획(BCP) 등 지속 관리
 - (방역관리) 재유행 시 학교 내 거리두기 강화 및 불필요한 이동 자제, 소독·환기 철저, 급식실 및 기숙사 등 관리 강화
 - (BCP) 보건교사, 급식종사자 등 격리 등에 대비, 기존 BCP 유지·보완
 - ※ (보건교사) 업무 대행자(교사) 지정, 인근 보건교사 및 교육청 순회 보건교사 연계·자문, (급식종사자) 상황별(영양(교)사 및 조리종사자 격리, 식재료 공급차질 등) 방안 마련
 - ※ 학교 내 주요 관리자 및 방역 담당자의 경우 최대한 별도의 근무장소 제공 및 동선 분리 등 감염 사전 차단